

	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평가위원회규정	규정번호	5-0-58
		제정일자	2020. 3. 1.
		개정일자	2024. 9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석 및 평가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교무학생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이 되고, 그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한다

1. 장애학생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
2.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관한 자체평가
3. 기타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4조(회의) 자체평가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5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.

② 위원회에서는 회의내용 기록, 평가 회의록, 평가자료 등을 보관하고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위원회에서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특별지원위원회와의관계) ① 본 위원회의 기능(장애학생 지원 정책 점검, 자체평가, 운영 개선 등)은 장애학생지원센터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수행한 평가·검토·운영 결과는 본 위원회의 평가 및 회의 결과로 본다.

③ 본 위원회는 기능이 특별지원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관련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.

④ 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위원을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. (개정 2024.9.1.)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(개정 2024.9.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자체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기간의 기능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본다.